

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응답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조사방법을 추가하고, 총조사의 시험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의 신설과 외국인의 포괄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4조의2(조사단위 및 조사 방법)

1) 조사방법의 추가

나. 제5조의2(조사의 보완) 신설

1)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

2)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

다. 제6조의2(행정자료 등의 대상)

1) 법률 추가(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)

2) 오탈자 수정(건축년도 → 건축연도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(2020.05.27.~2020.06.05.)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포함

2) 입법예고(2020.6.19.~2020.07.31.)

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

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5항 중 “인터넷을 통한 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 등의 방법”을 “인터넷을 통한 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, 전화조사 등의 방법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(조사의 보완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통계청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관한 사항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.
- ② 통계청장은 등록센서스 자료의 검증과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품질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“출입국관리법”을 “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“건축년도”를 “건축연도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의2(조사단위 및 조사방법) ① ~④ (생략)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센서스가 불가능한 조사항목은 조사요원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다. 다만,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인터넷을 통한 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 등의 방법으로</u> 실시할 수 있다. <u><신설></u>	제4조의2(조사단위 및 조사방법) ① ~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센서스가 불가능한 조사항목은 조사요원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다. 다만,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인터넷을 통한 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, 전화조사 등의 방법</u>으로 실시할 수 있다. 제5조의2(조사의 보완) ① <u>통계청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관한 사항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.</u> ② <u>통계청장은 등록센서스 자료의 검증과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품질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.</u>
제6조의2(행정자료 등의 대상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	제6조의2(행정자료 등의 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「출입국관리법」과 「<u>재외동포의</u>

현행	개정안
등록자료의 외국인등록번호,성명,거주지 주소 등 3. (생략) 4. (생략) ② 통계청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주택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종류, <u>건축년도</u>, 면적, 용도, 주소,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3.~4. (생략)	<u>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의 외국인등록번호,성명,거주지 주소 등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② 통계청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주택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종류, <u>건축연도</u>, 면적, 용도, 주소,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3~4. (현행과 같음)